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3. 8 선고 2022가단220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A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성낙환, 전승환

변론 종결2022. 12. 7.

판결 선고2023. 3. 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동산과 관련하여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2,472,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5.부터 2023. 3. 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94,606,318원 및 그 중 174,606,318원에 대하여 2021. 1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9. 10. 3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였다가 서울가정법원 2012드합10584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사건(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에서 2012. 12. 13.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어 이혼하였는데, 그 조정조항 중 제1, 2, 5항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이 사건 이혼소송의 원고)와 원고(이 사건 이혼소송의 피고)는 이혼한다.

2. 가. 피고와 원고는 C 명의의 별지 부동산목록 제1기재 토지와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제2, 3 기재 각 토지를 함께 매각하여, 각종 비용과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으로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제4, 5기재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각 '이 사건 제0부동산'이라 한다)에 설정된 주식회사 D에 대한 근저당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한다.

나.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이 실제로는 피고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갖는 것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는다.

라. 그 외에 현재 쌍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및 채무에 관하여는 각자 명의대로 각자에게 소유권 및 변제책임이 귀속됨을 확인한다.

5.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조정성립일 이후 서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 사건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며,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을 제기하지 않는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21. 5. 12. 주식회사 E와 사이에 피고의 조카인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던 이 사건 제1부동산을 419,900,000원에,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던 이 사건 제2, 3부동산을 498,850,000원에 각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12. 24.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조정 당시 이 사건 제1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21. 12. 24. 해지되어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조정 당시 이 사건 제2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43,8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제3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40,2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모두 2020. 9. 25.

해지되어 말소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제2, 3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G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주식회사 E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4,00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329,000,000원은 C에게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별지 목록 기재 동산 관련 청구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조정 당시에 원고의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별지 물건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가액인 2,000만 원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 등 참조). 부제소합의의 효력 유무나 그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조정조항 제2의 라항, 제5항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조정조항 제2의 가 내지 다항에서 정한 외에 현재 쌍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및 채무에 관하여는 각자 명의대로 각자에게 소유권 및 변제책임이 귀속됨을 확인하고, 이 사건 조정성립일 이후 서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 사건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며,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을 제기하지

않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각 조항의 문언상 이 사건 조정성립일 당시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되기로 하고 더 이상 분쟁을 차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동산 등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항 제5항의 부제소특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법원에 이 사건 동산 상당의 금원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내지 3 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각종 비용과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419,900,000원	498,850,000원	918,750,000원	다툼 없는 사실
채무	50,000,000원	80,000,000원	130,000,000원	다툼 없는 사실
양도소득세	98,384,820원	42,576,730원) = 4,377,830원 + 19,099,450원 + 19,099,450원, 42,579,594원은 오기로 보인다.원	140,961,550원	다툼 없는 사실
중개수수료	4,199,000원	4,988,500원	9,187,500원	다툼 없는 사실
회계사수수료	500,000원		500,000원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부담한 이자	12,852,000원	20,304,000원	33,156,000원	아래 나.1)항

나.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부담한 대출이자(정산대상)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조정조항의 문언 및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의 매매 및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대출이자(정산대상)가 발생할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고, 위 각 근저당권은 이자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대출이자(정산대상)는 금융비용으로서 '각종 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4, 5부동산에 관한 주식회사 D에 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480,000,000원이므로, 위 채권최고액 전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조정조항 제2의 가항이 실제 채무를 변제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자인하는 위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액인 4억 원을 공제함이 상당하다.

3) 피고는, C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을 관리하여 왔고,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으며, 이 사건 제1부동산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더 부담하게 되었는바, 원고와 피고는 C에게 관리비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으므로 위 2,000만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는, ① 원고가 2011. 1. 13.경 H으로부터 차용한 차용금 채무 1억 원에 대하여 자신이 원고를 대신하여 2011. 2. 10.부터 2022. 7.경까지 116개월간 매월 50만원씩 합계 5,8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5,800만 원의 구상금 채권이 있고, ② 원고가 2003년경 I와 서울 송파구 J, K호에 관하여 보증금 5,500만 원, 기간 2006년경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고가 위 보증금 중 4,5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4,500만 원 및 지연이자 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2018. 1. 12. 3,000만 원, 2018. 3 19. 2,000만 원으로 나누어 각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5,000만 원의 구상금 채권이 있는바, 피고가 위 각 구상금채권으로 원고에 대한 정산금 채무를 상계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1. 13. 원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고, 2011. 2. 10. 및 같은 달 H으로부터 각 5,000만 원씩을 송금 받은 사실, 피고가 2019. 1. 7.경부터 매월 L에게 5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 2018. 1. 12. 3,000만 원, 2018. 3 19. 2,000만 원을 각 해외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H 및 I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조정 당시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각 채무에 관한 언급이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한편 원고는 2022. 11. 30.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제2 내지 5토지를 매수할 당시의 차용금

채무, 사업자금 차용금 채무 및 원고가 그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므로 구상금을 청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조정성립 이전의 채무이므로, 이 사건 조정조항 제2. 라.항에 따라 변제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1) 그렇다면,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의 매매대금 합계액 918,750,000원에서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합계 130,000,000원, 양도소득세 합계 140,961,550원, 중개수수료 합계 9,187,500원, 회계사수수료 500,000원, 대출이자 합계 33,156,000원과 이 사건 제4, 5부동산의 근저당권 실제 피담보채무액 400,000,000원을 공제하면, 204,944,950원이 되고,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돈은 102,472,475원인데 그 중 40,000,000원만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62,472,475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2,472,47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정산금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써 이행을 청구한 다음 날인 2022. 5.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3.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윤아영

별지

1) = 4,377,830원 + 19,099,450원 + 19,099,450원, 42,579,594원은 오기로 보인다.